

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(안)

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신설하고, 제103조제4항, 제104조제4항제1호, 제108조제2항, 제10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4조, 제32조를 삭제한다.

제1조의2(기술심의위원회) ① 기술심의위원회는 목적에 따라 복수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각 분과별 심의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3조(주택설계기준) ④ 설계기준 등을 수립·시행할 경우에는 기술기준부서장과 협의하거나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04조(설계기술정보 자료수집) ④ 취득정보 처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·관리한다.

1. 수집된 정보 중 적용 가능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적용 여부를 확정하여 설계부서에 통보

제108조(주택단지계획) ② 설계부서장은 주택단지계획에 관한 각 공종별 의견, 부서 간 협조사항 및 부서별 검토사항 공유 등을 위한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단지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
제109조(주택단지 계획설계) ② 계획(안)에는 설계추진 배경, 목적, 내용,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. 다만, 특정지구에만 적용하는 설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<신설>	제1조의2(기술심의위원회) ① 기술심의위원회는 목적에 따라 복수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각 분과별 심의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	단지개발사업 기술심의위원회와 주택건설사업 주택설계위원회를 통합하여 총칙으로 조문이동
제14조(기술심의위원회) ① 기술심의위원회는 목적에 따라 복수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각 분과별 심의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	<삭제>	총칙으로 이동
제32조(용역평가의 절차) ① 규정 제31조에 따른 설계용역평가는 용역 준공 후 평가, 공사 준공 후 평가로 구분하며 감리용역은 용역 준공 후에 평가를 실시한다. ② 평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용역평가 결과를 봉인하여 평가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며 평가주관부서장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용역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사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부서장에게 통보한다. ③ 계약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결과를 용역업자 선정평가 지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④ 평가주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,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⑤ 용역평가에 대한 평가시기 및 방법, 결과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	<삭제>	개발사업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 수정

현행	개정	개정사유
제103조(주택설계기준) ④ 설계기준 등을 수립·시행할 경우에는 기술기준부서장과 협의하거나 설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103조(주택설계기준) ④ 설계기준 등을 수립·시행할 경우에는 기술기준부서장과 협의하거나 <u>기술심의위원회</u> 심의를 거쳐야 한다.	기술심의위원회로 통합, 명칭 통일
제104조(설계기술정보 자료수집) ④ 취득정보 처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·관리한다. 1. 수집된 정보 중 적용 가능한 사항은 설계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적용여부를 확정하여 설계부서에 통보	제104조(설계기술정보 자료수집) ④ 취득정보 처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·관리한다. 1. 수집된 정보 중 적용 가능한 사항은 <u>기술심의위원회</u> 에서 검토한 다음 적용여부를 확정하여 설계부서에 통보	
제108조(주택단지계획) ② 설계부서장은 주택단지계획에 관한 각 공종별 의견, 부서 간 협조사항 및 부서별 검토사항 공유 등을 위한 <u>주택설계위원회</u> 를 거쳐 단지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	제108조(주택단지계획) ② 설계부서장은 주택단지계획에 관한 각 공종별 의견, 부서 간 협조사항 및 부서별 검토사항 공유 등을 위한 <u>기술심의위원회</u> 를 거쳐 단지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	
제109조(주택단지 계획설계) ② 계획(안)에는 설계추진 배경, 목적, 내용,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<u>설계위원회</u> 를 거쳐 확정한다. 다만, 특정지구에만 적용하는 설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109조(주택단지 계획설계) ② 계획(안)에는 설계추진 배경, 목적, 내용,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<u>기술심의위원회</u> 를 거쳐 확정한다. 다만, 특정지구에만 적용하는 설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	